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59

발의연월일: 2021. 8. 2.

발 의 자:이종성・김승수・김용판

박성중 • 서병수 • 서정숙

유한홍 • 이용빈 • 임이자

정운천 · 조명희 · 지성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, 노인 등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체된 상황임.

실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2011년) 수립시 도입목표는 41.5%였으나 도입률은 19%에 그쳤고,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2016년) 수립시 도입목표는 42%였으나 20년말 기준 27.8%로 도입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.

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버스 등은 수소, 전기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

이에,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2022년~2026년)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·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함(안 제14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	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
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
	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
	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
	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환경친
	화적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
	한다.